

28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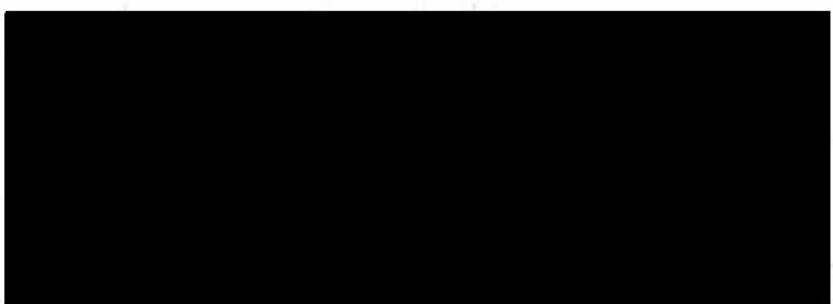
수원지방법원
판결

1983. 1. 31 선고 (인)
1983. 1. 31 수원지방법원

1714

사건 82고단 33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

피고인



검사



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전의 구공익수중 65일을 위 면에 산입한다.

이 유

(범죄사실) 피고인은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계획한 원동모방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배포된 유인물을 보고 알게된 정부의 근로자 탄압등 사회의 비리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원시위를 주도함 생각으로 1982. 11. 7.부터 18. 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위 유인물과 신문 보도 내용등을 근거로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, 원동모방 노조사건을 비롯한 근로자 탄압, 올림픽 유치의 부당성, 학원내 어용교수들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"선언서"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50매를 제작하여 시

176

워시 삼포하기로 마음먹고,

1982. 11. 23. 11:20경부터 14:30경까지 사이에 [] [] []

[] 대학 예배실에서 강단에 올라가 준비한 워시 유인물을 낭독하고 워시 대학 본관 연관앞으로 나와 그곳에 모여있는 50-6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워시 유인물을 뿌리며 선두에서 "이용교수 불타가자", "노동3권 보장하자" "올림픽 끊어쳐자", "박 삼미내자"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워시 학생들이 그에 동조하여 삼삼오오 스킨을 찢고 본관 앞 잔미밭 주위와 운동장을 돌며 같은 구호를 외치고 흔들리지 않게 전진거동의 노매를 부르며 시위를 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한 것이다.

(종거의요지)

1.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사와 같은 워시의 진술
 1.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사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
 1.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양 [] 이 등에 대한 구 진술조서중 판사사실에 부합하는 구 진술 기재
 1. 압수된 선언문(증제1,2호)의 구 현존
- (적용법조)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3조 제1항 제4호(징역형

197

선택. 영법 제57조.

1983. 1. 31.

관 사 세 영 수



등 분 이 달
198
수
법원서


178